

[발제문]

공유부 개념의 경제학적 해명

곽노완

1. 기존경제학의 공공재/공유부 구분기준과 기본소득의 공유부 개념: 경합성/차감성(subtractibility, 고갈성)과 배제성(exclusion) 기준의 재구성

공유(共有)의 법률적, 경제학적 의미

- 법률적으로 공유란 2사람 이상이 하나의 물건을 공동으로 소유함을 뜻함. 부동산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가 대표적임. 이와 차별적으로 공공재는 구성원 각자의 공동소유가 아니라 이와 별도로 정부나 지방자치체의 소유를 뜻함. 국유지, 공유지(公有地)가 대표적임. 이때의 公有地는 共有地(공동소유지)와 다른 점에 유의. 公有地는 수익권과 처분권을 정부나 지자체가 갖는 부동산이고, 共有地는 수익권이나 처분권을 공동소유자 각자가 갖는 부동산임. 이처럼 법률적으로 공유지 내지 공유재와 공공재는 확연히 구분되는 개념임.

- 공동소유의 다양한 법률적 형태로 共有(common ownership), 合有(partnership-ownership), 總有(Gesamteigentum)가 있음. 공유는 공동소유물에 대해 각각 다른 비율의 소유권을 가질 수 있고, 처분권까지 각각 갖는 소유권. 합유는 공동소유물에 대해 각각 다른 몫을 가질 수 있으나 처분권은 공동체가 갖는 경우. 총유는 공동소유물의 관리와 처분의 권능은 공동체에 속하지만, 그 재산의 사용과 수익의 권능은 공동체의 각 구성원에 속함. 게르만의 촌락 공동체가 전형적임. **‘공유재(부)’에서의 공유개념은 법률적으로 총유 개념에 해당.**

- 한편 기존 경제학에서는 共有財(富)와 公共財는 각각 영어의 commons(common-pool resources)와 public goods에 해당하는 의미. 共有財(富)는 소비는 경합적이나 배제에 따른 비용 부담이 과중하여 배제의 원칙이 적용되기 어려운 재화. 예를 들어 천연자원이나 희귀 동식물, 녹지, 국립 공원, 저수지, 강 등. 公共財는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을 갖춘 재화. 유용한 지식처럼 추가적인 소비자에게 해당 재화를 공급할 때 발생하는 한계 비용이 없고, 사람들을 해당 재화의 소비에서 제외할 수 없음.

→ 곧 기존 경제학의 공유 개념은 법률적 공유 개념과 달리, 사용권/수익권/처분권이 각자 또는 공동체 전체에 속하는가 여부보다는 상대적으로 경합적이냐, 배제적이냐를 기준으로 설정됨. 특히 함께 배제적이지 않은 공공재와 구분하는 기준으로 경합성(고갈성)의 상대적 비중이 설정됨. 共有財와 公共財의 법률적 차이, 공동체 성원 각자의 소유 vs. 정부소유의 차이가 모호해짐.

- 이처럼 상이한 기준에 따라, 법률적으로는 공유재가 아닌 공공재인데 경제학적으로는 공유재로 구분되는 경우가 방대하게 발생하여 혼란이 야기됨. 국공유지가 대표적임.

- 이러한 혼란은 법률적/경제학적 혼란에 그치지 않고, 일상과 정책에서도 막대한 혼란을 야기. 정부소유(지)의 경우는 사용권/수익권/처분권이 정부책임자의 특권적인 이익이나 편중된 판단에 따라 귀속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데(곧 사유화되는데), 정부소유(지)가 마치 모든 사회성원들에게 사용권/수익권/처분권을 자동적으로 담보한다는 착각이 정책입안자/집행자뿐만 아니라 진보적인 학자/사회운동가들에게도 물신적인 프레임으로 확립되어 있는 실정임. 현실사회주의와 사민주의적인 국유화 프레임이 실제로는 특권층의 사적인 이익과 부패로 귀결되는 측면은 이러한 착각과 혼돈에서 비롯.

- 기본소득을 공유재(부)에 대한 배당으로 정당화할 때, 이러한 착각과 과오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공유재(부) 개념을 기존 경제학에서와 차별적으로 공공재와 비슷한 것이 아니라 구분되고 오히려 대립되는 것으로 새롭게 정립할 필요가 있음.

- 특히 빅데이터, 지식 등 비경합적(비고갈적)이며 플러스 외부효과를 낳는 공유재(부)가 기하급수적으로 폭증하는 플랫폼경제시대에 경합성(고갈성)을 기준으로 한 기존 경제학의 공유재/공공재 구분기준은 사용권/수익권/처분권 특히 사용권/수익권이 공동체 성원 각자에게 귀속되는지 아니면 정부에 귀속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재구성될 필요가 있음.

- 이처럼 새로운 공유재(부) 프레임에서 보면, 기본소득의 재원은 우선적으로 기존에 정부권력층이 자신과 부자들의 사적인 이익에 편향된 방향으로 편성/사용해 왔던 공유수익을 환수하여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를 통해 국가물신주의에 편향되어 증세와 규제 남발로 신뢰를 상실한 기존의 오만하고 낡은 진보세력의 프레임에서 벗어나 국민의 신뢰를 얻는 새로운 진보 프레임, 공유주의 기본소득의 정치적 실현이 앞당겨 질 것임. 이 경우 점차적으로 국민 대다수는 지지하고, 권력층과 기존수혜자들은 강하게 반발할 수밖에 없음. 이는 공유재(부) 기본소득지지자들이 국민의 힘을 믿고 돌파해야만 할 장애물임. 현실사회주의와 사민주의에서 공유주의로!

2) 토지지대와 토지 공유부: 자유지상주의 vs. 사회적 공유주의의 현대적 토지지대의 공유화에 대한 두가지 패러다임

- 토지에 연루된 지대를 환수하여 공유하자는 토지공유 내지 지대공유 패러다임은 공유주의 기본소득론자들이 대체로 공유하는 패러다임일 것임.

- 그러나 토지공유 내지 지대공유 패러다임은 2가지 차별적인 전통을 가짐. 좌파자유지상주의 내지 자연적 공유주의와 사회적 공유주의의 전통이 그것임.

- 물론 좌파자유지상주의자들 중에서도 모두가 기본소득에 찬성하지는 않음. 우선 좌파 자유지상주의 내부에서 타이드만과 발렌타인은 자연자원을 사용하고 전유하는 원칙들을 다음과 같이 제시함.

- 1) 자기소유권을 보장하는 최소한의 수준에서, 다른 사람의 소유권을 침범하지 않는다면 각

자 타인의 승인 없이 자연자원을 **사용(use)**할 수 있다. 2) **적절한 보상을 지불한다면**, 각자 타인의 동의 없이도 아직 타인이 전유하지 않은 자연자원을 **전유(appropriate)**할 수 있다(같은 글: 45). 적절한 보상과 관련하여, 로스바르(Rothbard)와 키르츠너(Kirzner) 같은 극단적 우파 자유지상주의자들은 자연자원의 전유에 대한 일체의 보상을 불필요하다고 본다. 이는 애초부터 자연자원에 대한 공동소유권을 거부하는 관점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비해, 우파 자유지상주의자의 대표자인 노직(Nozick)은 다른 어떤 개인도 손해를 보지 않는다면 자연자원에 대한 누군가의 전유는 타인의 동의 및 보상 없이도 정당하다고 주장한다(Nozickean proviso, 노직의 단서). 타이드만과 발렌타인은 이러한 노직의 단서가 정의로운 전유의 필요조건임을 인정한다. 그러나 노직의 단서가 자연자원의 공동소유권을 위한 충분조건이 될 수는 없다고 본다. 왜냐하면 노직의 단서는 각각의 자연자원을 최초로 전유한 사람에게는 보상의 의무를 거의 지우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예를 들어 최초로 일정부분의 땅을 전유한 사람은 타인들에게 가시적인 손해를 거의 끼치지 않으면서 자연자원 전유의 효율성을 높인다. 그래서 노직의 단서에 따르면 그 전유는 정당화되고 보상을 거의 하지 않아도 된다. 타이드만과 발렌타인은 이를 감안할 때 노직처럼 자연자원의 전유에 따른 보상의 비교기준을 전유 이전으로 할 것이 아니라, **조지주의 자유지상주의(Georgist libertarianism)**에 따라 그러한 전유 권리의 경쟁가치(competitive value) 곧 시장청산가격으로 설정해야 한다고 본다(같은 글: 45-6). 그들은 내가 고용한 사람이나 임차한 기계에 대해서처럼 토지에 대해서도 요청받은 지대를 지불했다면 그 땅에서 난 사과를 내가 소유하는 게 정당하다고 본다. 타이드만에 따르면, 자연자원은 모두가 평등하게 소유하는 재산이므로 이에 대한 지대는 원리적으로 세계의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분배되어야 한다(같은 글: 46).¹⁾

- 곧 자연자원에 대한 지대를 거두어서 기본소득으로 분배하자는 것임. 이렇듯 **‘조지주의 자유지상주의’**의 입장 일각에서는 자연자원(의 가치)에 대한 평등한 소유권이 기본소득을 정당화하는 논거라 할 수 있음.

- 이러한 좌파자유지상주의 내지 자연적 공유주의의 관점의 난점은, 이미 수천/수백년 이전에 사유화되어 소유자가 여러 차례 바뀐 토지에 대한 공유권을 어디까지 설정할 것인가라는 문제에 대한 해답이 빈약하다는 점임. 이미 토지에 대해 시장청산가격을 지불한 새로운 토지소유자는 이미 이전 소유주에게 지대를 지불한 셈인데, 또 사회에 지대를 보상하라고 할 근거가 있는가? 타이드만은 결국 토지의 자연적 공동소유권 내지 원초적 공동소유권을 주장하면서 새로운 지주에게도 지대를 사회에 보상할 것을 주장하는데, 이는 새로운 지주에 대한 수탈이라고도 볼 수 있음. 공유지 용익권이라는 복잡한 우회로를 거쳐, 결국 기본소득을 모든 사람의 ‘원천적 공유’에 의해 정당화하는 금민(2020: 106쪽)도 이러한 좌파자유지상주의의 난점에 봉착하는 듯함. 금민 선생님의 답변이 기대됨~~

1) 그런데 타이드만의 공저자인 발렌타인은 이렇게 수취된 지대가 삶의 기회평등을 촉진하기 위해 현재 열악한 기회를 갖는 불우한 사람들에게 선택적으로 분배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처럼 자연자원에 대한 지구인의 공유권을 주장한다고 해서 곧바로 자원의 수익을 모두에게 동일하게 분배하는 무조건적인 지구기본소득을 옹호하는 주장으로 이어진다는 보장이 없다. 롤스주의자인 포지의 경우도 자원에 대한 공유권을 주장하지만 자원 및 생산물에 대한 과세 등으로 수취된 수익을 모두가 아니라 지구차원에서 가난한 최소수혜자에게 지구자원배당금으로 지급하자고 주장한다(Pogge, 2013: 382). 이러한 포지의 주장은 2가지 점에서 롤스의 견해와 차별적이다. 첫째로 롤스의 최소수혜자는 포지의 가난한 사람들과 달리 최소한 노동의무를 수용하는 사람이며(롤스, 2013: 147-8), 둘째로 롤스는 분배정의의 실행 범위를 국민국가 내부로 제한하고 국제자원의 정의에 대해서는 분배정의 개념이 아니라 공정한 협력과 상호 원조라는 훨씬 약한 원칙을 채택했다(Rawls, *The Law of People*, Harvard University Press, 1999: Van Parijs, 2017: 216-7에서 재인용).

- 이에 비해 사회적 공유주의의 입장에서는 토지의 원천적 공유가 아니라, 도시개발 등 사회적 투자로 인해 토지의 가치 및 지대가 상승하므로 이 지대상승분을 사회성원 모두가 공유하자는 주장을 제시함.

- 동시대의 사회전체조차, 토지 등 자연자원의 소유자가 아니라 점유자 또는 향유자에 불과하며 이를 개선하여 미래세대에게 물려주어야 한다는 마르크스의 주장을 사회적으로 전승된 자본과 모든 부로 확장하는 하워드는 마르크스주의 관점에서 자연자원과 전승된 자본 및 부와 이로부터 유래하는 기본소득도 원리적으로 지구차원에서 모든 인류와 후손들이 누려야 한다고 봄. 이는 지대도 사회적 투자로 인한 도시지대가 다양한 규모에서 기본소득으로 공유될 공유수익이라는 출입문을 열어주는 주장임.

- 마르크스는 도시지대를 농업지대로 설명할 수 있다고 주장한 점에서 한계를 갖는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인접효과 등에 따라 도시지대가 사회적인 개발과 투자에 따라 확대되며 “토지소유주가 이러한 사회의 진보를 가로챈다”(MEW 25: 781)는 사회적 투자지대론을 개시함으로써, ‘원초적 소유권’을 넘어서서 ‘사회적 공유주의’의 단초를 제시함.

- 하비는 이러한 도시개발이익의 사적인 인클로저에 반대하며 도시공유권을 확대하자고 주장함으로써 사회적 공유주의에 근접하였지만, 국가에게 공공재가 정치권력이나 자본이 인클로저하지 않고 공공목적에 부합하게 공급하라고 요청하는데 그치고 있음(Harvey, 2012: 159). 여기서 공유재와 공공재를 혼동하는 그의 난점이 드러남.

- 이러한 마르크스의 사회적 공유주의 전통의 한계를 넘어, 지대의 주요형태가 농업지대를 넘어 도시지대와 플랫폼지대로 전환되었으며 이처럼 사회의 공유자원을 투자하여 형성된 개발이익(도시지대)이나 공동체 모든 성원의 참여로 형성된 플랫폼지대를 공유자원 투자 및 공동노력에 대한 대가로 기본소득 재원으로 환수하는 것이, 사회적 공유주의의 노선이라고 할 수 있음. 이 경우 도시지대와 플랫폼지대의 일부 환수와 공유화라는 목표에 더해 도시토지 및 플랫폼 자체의 전부 또는 부분적인 공유화는 또 하나의 목표일 수 있지만, 강제성을 동반할 수는 없고 가능할 경우에도 원초적 공동소유권에 기초한 무상몰수가 아니라 창업자이익 내지 이전 소유주에게 지불한 당시의 시장청산가격 및 그간의 보유세에 대해서는 현재 소유자에게 정당한 보상이 필요할 것임(곽노완/권정임, 2020: 18쪽 이하).

3) 공유부배당의 경제적 효과: 재분배효과 + 알파

- 공유부배당의 직접적인 경제적 효과로는 재분배효과가 가장 두드러짐. 기본소득은 기존의 기초생활보장에 비해, 순수혜가구가 4% v 87%fh 압도적으로 많고(강남훈, 2011: 94쪽), 국토보유세와 토지배당을 결합한 재분배효과의 측면에서 순수혜가구의 비중이 95%로 기존의 종합부동산세에 비해 이론적으로 우수하고 정치적 실현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됨(강남훈/전강수/남기엽/이진수, 2017), 토지배당형 국토보유세의 순수혜가구 비중이 특히 높은 이유로는 개인이 아닌 법인의 보유세가 포함되었다는 점도 들 수 있음. 토지배당형 국토보유세의 경우, 공유주의 기본소득 정당화원리와 마찬가지로 원리로 정당화할 수 있음. 단, 자연주의적인 ‘원초적 소유권’을 전제한 정당화 원리라면 좌파자유지상주의와 동일한 난점을 내포하게 될 수 있음. 이에 비해, 사회 전체 성원의 투자와 노력에 따른 개발이익의 일부를 환수하여 배당한다는 사회적 공유주의의 원리에

따라 정당화한다면 좀 더 설득력을 갖게 될 것임. 단, 사회적 공유주의의 정당화원리에 따를 때 가장 이상적인 토지배당은 일률적인 보유세라기보다는 ‘공시지가 상승분의 일정비율 환수’ 형태 일 것임.

- 특히 조세보다 공유부기금에 기초한 기본소득 지급은 소득불평등과 자산불평등을 개선시키는 효과가 보다 클 것이라는 연구결과가 도출됨(이건민, 2020: 126-127).

- 이 외에도 기본소득은 지역화폐 및 사회적경제와 연계하여 보다 상생적인 순환을 강화하는데 기여할 수도 있음(유영성/강현철, 2020: 266).

- 뿐만 아니라, 인지자본주의론은 기본소득은 지식 생산과 확산에 기여하여 생산성에도 양(+)의 효과를 낳으며 이러한 양의 효과는 기존의 토지지대론으로 설명할 필요가 없고, 독자적인 지대(초과이윤)로 설명할 수 있다고 봄(안현효, 2014: 90쪽). 이 경우 기본소득은 인지지대 배당이면서 동시에 인지지대를 확장시키는 요인으로 간주됨.

- 판 바레이스의 말대로, 기본소득은 보다 원하는 노동을 여건을 만들어 주어 생산성이 향상되는 측면과 더불어 원하지 않는 노동을 하지 않게 되어 자발적 실업이 증가하고 사회총생산이 감소하는 측면 등 상반된 경제적 효과를 나타낼 수 있음(Van Parijs, 2017: 134 - 146).

[참고문헌]

1) 기존경제학의 공공재/공유부 구분기준과 기본소득의 공유부 개념: 경합성/차감성(subtractibility, 고갈성)과 배제성(exclusion) 기준의 재구성
 광노완, 2017, 「스마트공유도시와 도시기본소득의 비전」, 『인문사회21』, 8권4호, 1127-1133쪽
 (3절 스마트도시에서 공유경제와 선물경제).
 금민, 2020, 『모두의 몫을 모두에게』, 114-121쪽.

2) 토지지대와 토지 공유부: 자유지상주의 vs. 사회적 공유주의의 현대적 토지지대의 공유화에 대한 두가지 패러다임
 광노완, 2017, 「지구기본소득과 지구공유지의 철학」, 2절.
 광노완, 2020, 「플랫폼자본주의 시대의 도시공유지와 기본소득」.
 금민, 2020, 『모두의 몫을 모두에게』, 96-106쪽.

3) 공유부배당의 경제적 효과: 재분배효과 + 알파
 강남훈, 전강수, 남기업 외, 2017, 「부동산과 불평등 그리고 국토보유세」, 『사회경제평론』, 30권 3호.
 강남훈, 2013, 「한국에서 기본소득 정책과 기초생활보장 정책의 재분배효과 비교」.
 이진민, 2020, 「기본소득 쟁점」, 『모두의 경제적 자유를 위한 기본소득』, 다할미디어.
 유영성, 강현철, 2020, 「기본소득과 사회적 경제」, 『모두의 경제적 자유를 위한 기본소득』, 다할 미디어.
 Van Parijs, 2017, *Basic Income*, Harvard, Ch. 6: Economically Sustainable? (번역본 있음).

안현효, 2017, 「인지자본주의와 기본소득」,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기본소득의 쟁점과 대안사회』, 박종철출판사.